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7 선고 2024가단507151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택도시보증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
담당변호사 가영현

피 고 1. A
2. B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24. 5. 7.

주 문

- 피고 A은,
가.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55㎡(C호)를 인도하고,
나. 원고에게 98,960,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25.부터 2024. 3. 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돈 중 15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,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이서윤

별지